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I . 제안경위

1. 정지권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정지권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522호

다. 제출일자 : 2019. 3. 29.

라. 회부일자 : 2019. 4. 3.

2.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정진철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551호

다. 제출일자 : 2019. 3. 29.

라. 회부일자 : 2019. 4. 3.

II . 제안사유

1. 정지권 의원 대표발의안

- 서울시에서 재정지원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간 일어나는 차내 안전사고 및 차 내·외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정책에 반영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

- 현재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라 버스운송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그 조건의 일환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외부회계감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는 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임
- 또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소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범정부적인 국가기구가 구성되는 등 관련 종합대책이 계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며, 같은 일환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경제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음
- 이에 시장의 책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전기자동차로 신규 시내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문

화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
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정지권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11조제2항 중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시내버스의 교통사고 및 시내버스 내 안전사고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로 한다.

2.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삭제(안 제4조)
나.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전기자동차로 신규 시내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9조제6항)

Ⅳ. 참고사항

1. 정지권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4. 8. ~ 4. 15.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원안 수용¹⁾

- 시내버스 사고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상에 시내버스 안전사고 현황 파악 및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에 동의함

- 향후 시내버스를 포함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시 시내버스 사고 현황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음

2.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4. 8. ~ 4. 15.

- 제출의견 : 의견없음

1) 버스정책과-10706(2018.4.16.)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원안 수용²⁾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독립된 외부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례상에 규정함은 타당성이 있음
- 여객자동차를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자동차·전기자동차로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조례상에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교통정책과-1003(2019.1.17.)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1. 정지권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물론 시내버스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여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토록 함으로써 서울시민이 시내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시내버스³⁾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시 대중교통 교통사고 발생현황 중 버스 관련 사고는 '15년 총 1,641건, 사망자 33명, 부상자 2,499명, '16년 총 1,639건, 사망자 23명, 부상자 2,334명, '17년 1,650건, 사망자 29명, 부상자 2,377명으로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

※ 참고 : 대중교통 교통사고 발생현황(단위:건, 명)

구분	2015			2016			2017			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버스	1,641	33	2,499	1,639	23	2,334	1,650	29	2,377	4,930	85	7,210
택시	8,739	65	12,539	8,545	57	12,430	8,165	45	11,991	25,449	167	36,960
지하철	2	1	1	3	2	3	2	0	1	7	3	5
합계	10,382	99	15,039	10,187	82	14,767	9,817	74	14,369	30,386	255	44,175

3) 시내버스 총 65개 회사, 352개 노선, 총 인가대수 7,405대, 운행대수 6,976대, 예비차대수 429대

- 또한, 서울시 총 일일 통행량(32,410,488 통행) 중에 서울 시내 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26.5%(8,568,913 통행)에 이를 만큼 주요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시내버스 관련 교통사고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내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할 것임

※ 참고 : 개별수단통행량(2015년 평일 기준, 단위:통행/일)

구 분	총 수단	승용차	대 중 교 통			택 시	기 타
			소 계	버 스	지하철.철도		
서울 관련 (계)	32,410,448 (100.0%)	7,466,657 (23.0%)	21,283,088 (65.8%)	<u>8,568,913</u> (26.5%)	12,714,175 (39.3%)	2,219,780 (6.8%)	1,440,923 (4.4%)
서울 내부 (서울↔서울)	22,790,807 (100.0%)	4,386,186 (19.2%)	15,465,380 (67.9%)	<u>6,582,656</u> (28.9%)	8,882,724 (39.0%)	2,013,068 (8.8%)	926,173 (4.1%)
시계 유출입 (서울↔시외)	9,619,641 (100.0%)	3,080,471 (32.1%)	5,817,708 (60.4%)	<u>1,986,257</u> (20.6%)	3,831,451 (39.8%)	206,712 (2.1%)	514,750 (5.4%)
시외↔시외	24,106,893 (100.0%)	12,068,503 (50.1%)	8,859,039 (36.7%)	<u>7,120,897</u> (29.5%)	1,738,143 (7.2%)	1,609,957 (6.8%)	1,569,394 (6.4%)
합 계	56,517,341 (100.0%)	19,535,160 (34.6%)	30,142,127 (53.4%)	<u>15,689,810</u> (27.8%)	14,452,317 (25.6%)	3,829,737 (6.8%)	3,010,317 (5.2%)

2.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장의 책무에 시내버스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와 관련(안 제4조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65개 사업자 중에서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자가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65개 시내버스 사업자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임
- 외감법 등⁴⁾에서는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 65개 시내버스 회사 중에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어 법률적인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38개 회사에 이르고 있음(별첨 참고)
- 다만,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자 운송수입금공동관리 지침” 제19조제1항⁵⁾에 따라 전체 65개 회사가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미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과건근로자

5) 제19조(운송사업체 준수사항)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체는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평가 항목 중 “재무 건전성”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방안도 운영하고 있음

- 한편, 동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 자문결과 “현행 조례는 재정지원이라는 수혜적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서 공정성, 건전성 등을 담보로 수익적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음⁶⁾

- 결론적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전체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파악과 함께 매년 서울시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의 건전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 지침 및 평가 등을 통해 시내버스 회사들이 실시하는 외부감사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외부회계감사 실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친화적 시내버스 도입 관련(안 제9조제6항 관련)

- 서울시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2017년 ‘서울 차 없는 날’ 기념식에서 “서울 전기차 시대”⁷⁾를 발표하였고,

이후에도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⁸⁾ 선언에서 2022년까지 전기차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모든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이 불가하다는 의견(1건)도 있음

7) ‘서울 전기차 시대’ 공동선언문 발표

- 일시 : 2017년 9월 24일 / 장소 : 서울광장

- 참여기관 : 서울시, 서울시의회, 환경부,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 우리은행,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주요내용 : 전기차 보급 확대, 모든 주유소 급속충전기 설치, 관련 조례 개정 등

8)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 발표(2018.10.29.)

8만대, 수소차 3천대 시대를 연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수소차와 전기차 도입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도입 추진계획”을⁹⁾ 통해 3천대 규모의 연차별 전기버스 도입계획을 세운 바 있으며, 현재 29대의 전기버스가 도입·운영 중임

또한 2018년 “친환경 수소버스 시범도입 추진계획”을¹⁰⁾ 수립하여 '18년 수소버스 1대를 시내버스로 도입·운영중이며¹¹⁾, '19년 7대를 추가 도입하고, 수소충전소 설치도 추진 중에 있음

※ 참고 : 연차별 전기 시내버스 도입목표

구 분	합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시내버스 대·폐차 수요	4,703	639	943	872	747	313	275	530	384
저상버스 도입계획	4,510	446	943	872	747	313	275	530	384
전기 시내버스 연차별 도입목표	3,000	30	100	640	740	310	270	530	380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전기 및 수소 시내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¹²⁾에서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책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주요내용 : 2021년까지 권역별 총 6개 수소 충전시설을 구축, 2022년까지 수소차 3천대 보급

9) 버스정책과-14662, 2018.5.31.

10) 버스정책과-31050, 2018.11.15.

11) 삼성여객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다만, 관련 법¹³⁾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해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 후략 -

[별첨] 2018년도 기준 법정 회계감사 대상 시내버스 업체현황

순번	회사명	법정감사 대상여부	법정감사 대상사유	순번	회사명	법정감사 대상여부	법정감사 대상사유
1	경성여객	X		34	선일교통	X	
2	공항버스	X		35	선진운수	O	자산총액 120억 이상
3	관악교통	X		36	성원여객	X	
4	군포교통	X		37	세풍운수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5	김포교통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38	송과상운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6	남성교통	O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39	신길운수	O	부채총액 70억, 자산총액 70억 이상
7	다모아 자동차	O	종업원수 300인,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40	신인운수	X	
8	대성운수	O	부채총액 70억, 자산총액 70억 이상	41	신촌교통	X	
9	대원교통	O	자산총액 119억원 이상	42	신흥기업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10	대원여객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43	아진교통	X	
11	대진여객	O	자산총액 120억원이상	44	안양교통	X	
12	대흥교통	X		45	영신여객	X	
13	도선여객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46	영인운수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14	도원교통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47	양천운수	X	
15	동성교통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48	우신버스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16	동아운수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49	우신운수	X	
17	동해운수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50	원버스	X	
18	메트로 버스	X		51	유성운수	X	
19	범일운수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52	정평운수	X	
20	보광교통	X		53	제일여객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21	보광운수	X		54	중부운수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22	보성운수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55	진아교통	X	
23	보영운수	X		56	진화운수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24	북부운수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57	태릉교통	X	
25	삼성여객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58	태진운수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26	삼양교통	X		59	한국brt 자동차	O	종업원수 300인,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27	삼화상운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60	한남여객	O	종업원수 300인,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28	상진운수	O	부채총액 70억, 자산총액 70억 이상	61	한서교통	X	
29	서부운수	X		62	한성여객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30	서울교통 네트워크	O	종업원수 300인,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63	한성운수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31	서울버스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64	현대교통	X	
32	서울승합	O	종업원수 300인,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65	홍안운수	O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33	서울운수	O	종업원수 300인,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